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8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변론 종결 2020. 6. 11.

판결 선고 2020. 7. 9.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11. 2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1,600만 원, 피고 C은 1,032만 원, 피고 E은 6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로 2019. 6.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계좌로 각 금원(피고 B 1,600만 원, 피고 C 1,032만 원, 피고E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피고들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것에 해당하다.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입금 받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그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체적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그 양도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피고 C, 피고 E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입금 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그에 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으며 별다른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들이 타인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전자금융사기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과실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청 구 원 인

1. 성명불상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2016. 6. 17.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F 은행을 사칭하면서 원고가 각 금융권에 기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카드론 등을 변제하게 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저금리로 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는 한편,

2019. 6. 17.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계좌당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증비, 법무비용 등을 입금하면 원하는 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담당법무사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 ① 2019. 6. 17. 피고 B 명의의 G 은행계좌(H)로 금 10,000,000원, 2019. 6. 18. 금 6,000,000원을 합한 16,000,000원을,
- ② 2019. 6. 18. 피고 C 명의의 I 은행 계좌(J)로 금 5,000,000원, 2019. 6. 19. 금 5,320,000원을 합하여 10,320,000원을,
- ③ 2019. 6. 19. 피고 D 명의의 K 계좌(L)로 금 8,000,000원을,
- ④ 2019. 6. 20. 피고 E 명의의 I 은행계좌(M)로 금 6,500,000원을 합하여 도합 금 40,82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 받아 편취한 것입니다.

2.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 및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속은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해당은행(F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별첨 ‘사건사고사실확인서’와 같이 관할경찰서에 사기 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현재 주범인 성명불상자는 물론 공범 관계에 있는 각 피고들에 대하여 다각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충분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것, 간접적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통장 등을 대여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일반인 그 누구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임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내준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과실로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 760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피고들의 접근매체 양도행위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원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및 검찰 사건 처분 결과를 지켜본 이후 각 피고들에 대하여 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원고는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각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토대로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치를 신청하여 각 피고들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보정하겠습니다.

6. 원고는 현재 피고들의 사기 행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들어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